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18. 07. 17.

개정 2019. 11. 19.

개정 2022. 09. 30.

개정 2023. 01. 20.

## 제1조 (목적)

본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58조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관련 법규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과 투자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2.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3. 신탁업자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업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6. 성과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법 제86조,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
7.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

8.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9.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산에 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10. 성과수수료 : 투자일임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1.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
2.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성과수수료 부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제5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1.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2.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4.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세부내용은 [별첨1] 참조)

#### **제6조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제7조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공시)**

1. 회사는 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법 제58조 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 1]

##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 ■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계약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 산정기준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산정방식,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고객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기본수수료

- ① 정률기본수수료 : 계약금액의 0% ~ 3.0% (VAT 별도)
- ② 정액기본수수료 : 정률 기본수수료율을 참고하되, 투자자와 회사가 합의한 정액의 금액을 기본수수료로 한다.
- 계약기간 내 계약금액의 증액이나 부분 감액이 있을 경우의 기본수수료는 고객과의 합의에 따른다.

#### 2.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성과수수료

- 성과수수료의 계산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 또는 재설정일로부터 결산일까지로 한다.
- 계약금액의 0%~7%를 초과한 수익금액의 연 30%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수수료 지급방법

- 기본 및 성과수수료는 십 원 미만 절사한다.
-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성과수수료는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결산 후 재설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산일 현재의 순자산총액을 재설정일로부터 다음 결산일까지 최초계약금액으로 한다.
- 기본 및 성과수수료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고객과 회사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중도해지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